특약 변경 대비표

1. 약관명: 「하나 청년도약계좌」 특약

2. 변경 시행일: 2024년 01월 25일(목)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적용

4. 주요변경 내용: 「청년희망적금」 만기지급금의 「청년도약계좌」 일시납입 신규

<신구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1. <생략> 2. ~ 5. <신설>	**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** 1. <좌동> 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이 적금 최초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[주6)]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가입 후 2개년[주7)] 동안 납입한도는 1,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※주6) 최소 200만원 이상이어야 함(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) ※주7) (예시) '24.2.22일 가입시 2개년 ('24.2.22~'26.2.21) 3. 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,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납입중지 처리됩니다. 4. 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은 이 적금 가입신청시 선택한 기간(일시 납입 기간)동안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. 5. 제2항에 따라 이 적금에 일시납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적금에 가입신청해야 합니다.	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
2.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(취소, 변경 등)은 제한 될 수 있습 니다.	6.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이 적금에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(취소·변경 등)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	
<부칙> 이 특약은 2023년 6월 15부터 시행합니다. 이 특약은 2023년 7월 10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 <신설>	**<부칙>** 이 특약은 2023년 6월 15부터 시행합니다. 이 특약은 2023년 7월 10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 이 특약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며. 변경된 특약은 기존 가입고객에도 소급적용합니다.	